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건설사고등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건설공사 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월 26일 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규봉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의 「감리제도 합리화 방안」과 김예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감리제도의 국제화 방안」의 내용을 게재한다.

감리제도 합리화 방안 및 국제화 방안

감리제도 합리화 방안

한규봉/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Ⅰ. 책임감리제도 탄생의 배경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1986년 당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던 독립기념관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하여 마련된 「건설공사 제도개선-부실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1987.10.24 제정공포)하게 되면서 법의 주요 핵심 사항의 하나로서 공공공사에 대한 품질 및 내구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실을 차단하고 날로 발전하는 기술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접 공사를 감독하던 제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민간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을 감리하게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그 효과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1993년 12월 31일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감리기능을 강화한 제도로 개정,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되리라 예상된다.

Ⅱ. 현행 감리제도

1. 우리의 감리제도

우리 나라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민간 감리제도의 도입 연륜이 짧고, 특히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경험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나고 있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리업무와 관련한 발주자, 시공자는 물론 감리자조차도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 의무등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조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하겠다.

우리 나라의 현행 감리제도는 시설물이 완성되기까지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전 과정을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능력이 배제된채 주로 시공감리만으로 완벽한 시공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감리자는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재량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도 않음은 물론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도 정착을 위한 육성 단계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와 우수감리인력의 확보 및 양성, 감리원의 책임감 고취 및 소속감 부여,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성 확보, 입찰제도등 감리자 선정 방법의 개선, 감리대가 현실화 등이 성패의 관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품질향상과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한 감리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감리자의 자세가 확립되고 감리자로서의 수준 높은 안목을 가지는 것이 제도의 개선에 선행하여야 할 과제이다.

○ 책임감리제도의 주요내용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1. 감리대상공사</td><td>○ 대상기관의 범위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등 공공기관
○ 대상건설공사의 범위
-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및 바닥면적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0억원 이하는 필요시 부분 책임감리)</td></tr>
<tr><td>2. 감리원 자격</td><td>○ 건설기술자격 소지자(기술자, 건축사, 기사1급, 기사2급)
○ 학력·경력자 자격인정</td></tr>
<tr><td>3. 감리원의 업무범위</td><td>○ 시공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확인
○ 품질관리시험·계획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td></tr>
<tr><td>4.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td><td>○ 권한 : 공사중지명령권, 재시공명령권, 기성 및 준공검사권
○ 책임 :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 취소, 사안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td></tr>
<tr><td>5. 감리원의 배치기준</td><td>○ 배치기준(공사규모별)
<table>
<tr><th>구 분</th><th>책임감리원</th><th>보조감리원</th></tr>
<tr><td>총공사비 200억원이상</td><td>특급감리원</td><td>초급감리원 이상</td></tr>
<tr><td>〃 50~200억원</td><td>고급 〃</td><td>〃</td></tr>
<tr><td>〃 50억원 미만</td><td>중급 〃</td><td>〃</td></tr>
</table>
○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table>
<tr><th>구 분</th><th>최소배치기준</th><th>비 고</th></tr>
<tr><td>단순공종인 경우</td><td>현장상주3인</td><td>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td></tr>
<tr><td>단순공종이외의 경우</td><td>현장상주5인</td><td>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4인</td></tr>
</table></td></tr>
</table>

2. 외국의 감리제도

외국의 공사감리는 공공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기관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운영과 감리를 일괄 위탁하는 경우와 설계의 독창성이나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하여 위탁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6.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td><td>○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
<table>
<tr><th colspan="2">종 류</th><th>감 리 원</th><th>자 본 금</th><th>시 설</th><th>장비</th><th>비고</th></tr>
<tr><td rowspan="3">감리전문회사</td><td>종합</td><td>특급 10인포함 50인 이상</td><td>10억원이상</td><td>사무실 300 제곱미터 이상</td><td rowspan="2">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장비등</td><td rowspan="2"></td></tr>
<tr><td>토목</td><td>특급 5인포함 30인 이상</td><td>3억원이상</td><td>사무실 200 제곱미터 이상</td></tr>
<tr><td>건축</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7.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방법</td><td>○ 3 억 원 이 하 : 공개경쟁, 85%직상낙찰제
○ 3억원～10억원 : PQ로 2～3개사 선정, 85%직상낙찰제
○ 10 억 원 이 상 : 〃 〃 최저가 낙찰제</td></tr>
<tr><td>8. 감리대가</td><td>(단위:인, 월)
<table>
<tr><th>공사비 (억원)</th><th>단순한공종</th><th>보통의공종</th><th>복잡한공종</th><th>참고사항
공사비에 따른 개산요율
(보통의 공종의 경우)</th></tr>
<tr><td>50</td><td>36</td><td>41</td><td>45</td><td>4..78</td></tr>
<tr><td>70</td><td>47</td><td>53</td><td>58</td><td>4.37</td></tr>
<tr><td>100</td><td>63</td><td>70</td><td>77</td><td>4.05</td></tr>
<tr><td>150</td><td>85</td><td>95</td><td>104</td><td>3.66</td></tr>
<tr><td>200</td><td>107</td><td>119</td><td>130</td><td>3.42</td></tr>
<tr><td>300</td><td>146</td><td>163</td><td>179</td><td>3.11</td></tr>
<tr><td>400</td><td>182</td><td>203</td><td>223</td><td>2.90</td></tr>
<tr><td>500</td><td>216</td><td>241</td><td>265</td><td>2.77</td></tr>
<tr><td>700</td><td>280</td><td>312</td><td>343</td><td>2.55</td></tr>
<tr><td>1,000</td><td>369</td><td>410</td><td>451</td><td>2.39</td></tr>
<tr><td>1,500</td><td>504</td><td>560</td><td>616</td><td>2.18</td></tr>
<tr><td>2,000</td><td>629</td><td>699</td><td>768</td><td>2.03</td></tr>
</table></td></tr>
<tr><td>9. 감리업무수행지침서</td><td>○ 감리요령, 방법, 절차등 명시
○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회사간의 업무 및 책임한계</td></tr>
<tr><td>10. 외국감리업체의 활용</td><td>○ 신공법등 특수한 공법으로 공사하는 공사로서 국내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기 곤란한 경우 및 공사비예정가격에 85%미만으로 낙찰된공사(1995년 7월부터 전면 개방)</td></tr>
</table>

있다.

이 경우 감리기관은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계약조건에서 그 권한이 보장되고 양자간 분쟁에 있어서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서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감독, 독려하면서 대상 공사의 성격과 계약방식에 따라

- 제삼자가 설계한 단순공사 시공감리
- 자신이 직접 설계한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
- 설계와 시공에 대한 감리 및 계약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우리 나라와 외국의 감리를 상호 비교하기에는 감리(CONSTRUCTION MANAGEMENT) 개념 자체가 FULL TURNKEY BASE형태로 되어 있어 단수 대비가 어려운 관계로 외국 감리의 사례와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감리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① 외국 감리의 구분(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1. 일반시공감리	○ 내 용 : 제삼자가 설계한 대형구조물이 없는 단순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감리 수행 ○ 업무내용 : 기술지도, 시공의 검사 및 확인, 계약사무관리 ○ 독립된 위치에서 재량권 행사
2. 설계·시공감리	○ 내 용 : 설계의 독창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도입된 토목공사에서 채택되는 제도로 설계전문용역기관이 공사의 설계와 시공감리에 대한 일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 ○ 업무내용 : 설계업무 및 시공감리업무 전반 ○ 방 법 : 설계대로 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설계자에 의한 시공감리수행 (설계는 현장조건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장 점 : 설계하자는 시공하자에 제거 ○ 완공된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시공하자로 지적되지만 그 후에 설계하자로 추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설계자는 자신에 의한 시공감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됨
3. 턴키공사의 감리	○ 내 용 : 산업플랜트공사에서 채택되어 온 방식이나 최근에는 토목·건축공사에서도 흔히 채택되고 있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감리기관을 고용해서 제안서의 평가, 설계의 검토승인, 시공감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업무내용 : 설계감리와 시공감리 업무전반 ※ 설계와 시공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면에서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감리업무를 수행함.

② 국가별 공공공사 감리제도

미국의 경우

-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FULL CM(CONSTRUCTION MANAGEMENT)관계로 기술력 및 건설경영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활용하는 「건설관리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한다.
- 감리의 주체는 주마다 다르나(예 텍사스주-국가등, 캘리포니아주-민간) 설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의 사업 전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아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의 경우

- 대부분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FULL C.M관계로 계약에 의하여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가 정해지는데 대체로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없다.
- 감리자의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감리의 주체가 국가등에서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독일의 경우

- 대부분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FULL C.M 관계이나 부분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 계약에 의하여 감리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가 정해지는데 대체로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없다.
- 감리자의 자격 기준 및 기술 수준은 국내의 대학 수준 이상이다.
- 감리의 주체는 주요 공사의 경우 국가등에서 수행하고 기타 공사는 민간에서 담당하는데 그 비율은 각각 50%정도가 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 대부분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FULL C.M 관계이나 부분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 대부분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리자 자격 기준은 없이 일정 학교 학과 졸업자는 인정하고 있다.
- 감리의 주체는 토목공사의 경우 국가등이 수행하고 건축 및 기타 공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을 민간에게 이양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 공사 전반의 업무를 발주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 민간 건축공사 이외에는 별도의 감리 관련 법규가 없으며 대부분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공사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동의 경우
- 대체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감리를 수행할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선진 외국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를 의뢰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때까지 시공회사의 선정, 공사감독, 준공 및 준공 후의 사후관리등을 일괄 수행하게 하고 있다.

Ⅲ.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건설공사에 있어서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에 못지않게 감리원은 물론 전 건설관계자의 자기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감리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감리원, 시공자, 발주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감리제도 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감리원의 역할과 자세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원의 역할을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원은 「공인의식」「역사의식」「책임감」을 가지고 건설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며,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 영업적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문 기술자로서의 자세 확립
- 부실공사나 품질을 보는 눈, 즉 감리자로서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
- 사사로운 정이나 비리에 얽매이지 않고 부실 방지를 위하여 떳떳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각오
- 부실 감리의 근원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 입찰 행위의 배격

등 감리자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재인식하여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만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부실 방지는 물론 책임감리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역할만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루빨리 건실한 건설 풍토의 조성으로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위주로 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시공자의 책임시공

우리 건설 분야는 건설 기술의 향상을 통한 품질의 고급화와 대외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제도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시책 속에서 내몫 찾기에 우선하는 업계의 관행,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층의 의지와 노력의 부족, 여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실」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

특히, 시공 관련 건설업계의 자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불법 하도급 관행, 미숙련 기능공의 투입, 필요 수준의 기술 인력 투입 회피, 공종단계별 적정 공기를 무시한 무리한 공사기간의 단축, 규격미달자재의 사용 및 총체적 품질관리의 소홀등 양질시공에 역행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거리낌없이 저질러지고 있어도 어쩌면 무감각한 지경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건설인에게 있어 부실건설공사로 낙인된 불명예의 1차적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부실공사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시공을 위한 역할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온 국민들로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탄을 받고 있는 처지인 현시점에서 설계·감리등 업무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또한 부실시공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까 염려된다.

따라서 적정공사비가 양질의 공사를 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업체상호간의 과당경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떨어뜨리는 일도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시공이 충분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의 역할은 필요 없게되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지도 위주의 진정한 감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3. 발주자의 감리업무 감독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는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장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발주기관의 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감리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리자는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독립성과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주어진 권한 역시 적극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업무담당관(발주기관 공무원)의 업무범위,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감리업무처리절차에 대한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간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감리제도가 당초의 의도대로 정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업무 체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하며 특히, 감리에 있어서는 그 기능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성실한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의 발주자(업무담당관)는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여 감리자와 시공자의 관계를 조정, 통제, 지원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시공활동전반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은 감리자에게 최대한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4. 감리제도 개선

가. 감리대상 시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 지자제,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공, 도공, 수공, 토공, 농진공, 한전, 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지방공사는 자체직원중 건설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동법 시행령에서 감리제도권에서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당초 정부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책임감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기 기관들도 2~3년안에 연착적으로 감리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책임감리 대상기관(국가등 공공기관) 및 대상건설공사의 범위(공사규모 기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감리제도의 목적이 주요 건설공사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대상 기관 및 공사의 범위외에도 공사비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과 민·관을 구분하지 않고 감리의 필요성에 따라 감리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감리자의 자격 범위도 넓혀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나. 감리원의 업무범위

1) 감리원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사항에 대하여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하고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부족으로 감리원의 조치에 대한 시공자의 이행 미흡, 발주자(업무연락관)의 감리원권한 무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감리원은 독립성·재량권의 상실, 자부심과 책임감의 결여, 감리원의 역할에 대한 회의 및 과중한 처벌등 책임문제에 대한 심적 부담까지 안게 되며, 점차 타분야로의 이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간의 명확한 업무구분과 감리원에게 시공상태의 감시감독 및 조치 권한에 대한 재량권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일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과 실효성있는 정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중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책임의 소재가 시공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공사현장전반에 관한 시공상의 안전관리실태를 확인, 지도하는 협력자의 입장이나 문제발생시 과중한 처벌을 받는 등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어 명문 규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감리원이 감리현장에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서류가 공사 감리일지를 비롯하여 40여종에 달하고 있어 내업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시공자만 유지 관리하면 될 서류의 작성이 이를 생략 또는 통폐합으로 단순화하므로써 시공현장에 대한 감시감독 및 기술지도 위주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감리원의 배치

1) 연차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당해년도 감리비 예산규모에 따라 감리인원과 기간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의 감리업무 추진 과정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종류와 현장별로 공사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 최소배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제도상 현장상주감리원을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상급감리원의 배치를 발주자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급, 고급의 상급감리원 자격과 경험, 전문지식 등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기술자의 수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상급기술자를 많이 배치함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입회하여 초급·중급감리원이 많이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초급감리원의 배치는 감리원을 양성·교육하는 제도적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책임감리원은 적정한 중급 및 초급감리원을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현장 감리업무를 관장하고 본사에 상급감리원 자격의 전문기술자를 다수 확보하여 서류 검토와 필요시 현장에 출장,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본사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효과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사가 진행되는 공종별 공정에 따라 해당직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는 제도를 채택하여 책임감리원이 본사에 요청, 공정기간별 해당 직종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감리업무 착수 시의 감리원 현장배치 계획으로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책임감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라. 감리용역의 대가

1) 현행 제도상 감리자 선정(감리용역입찰제도)은 금액을 기준하여 10억이상은 최저가낙찰, 10억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85% 직상입찰가 낙찰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감리용역의 특성상 감리대가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가 낙찰시 부실감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예가 대비 90% 직상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감리 본연의 업무 외의 발주자로부터 추가 설계 또는 당초 설계와 전혀 다른 대폭적인 설계변경등의 업무를 요구받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대가 외에 별도의 기술용역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3) 현행 감리대가 기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감리원 노임단가에 제수당 및 비용 별도로 추가 책정
- 동계 기간, 공사중지기간중 최소감리 인력 배치
- 현장의 교통 및 지형 여건을 감안한 적정 수량의 차량 제공
- 연장, 야간, 휴일 근무비의 반영

마.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

감리자의 역할이 건설공사를 위한 조사, 계획 및 설계도서의 작성이나 직접 시설물을 축조하는 시공의 역할과는 달리 시공활동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감시감독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자 및 시공자와의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기술인의 긍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며 감리업무의 특성상 그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아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고 명확한 업무 및 책임한계에 따라 책임지고 벌을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상의 처벌 규정은 처벌 제일주의의 사고에서 강력한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여론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리업무종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바. 감리원의 교육

책임감리제도의 초기 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감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실감하고 있으나, 3년마다 2~3주씩의 교육을 시행할 경우 감리현장의 업무공백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감리원에 참여하기 위한 첫번째 교육은 필요에 따라 2주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3년주기의 2차 교육부터는 1주정도의 기간으로 밀도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군대와 같은 합숙교육이나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교육비 부담은 시정되어야 한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연륜이 일천하여 제도의 집행과 운용에 미숙한 점은 적지 않다.

정부에서 책임감리제도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처벌위조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보호 육성 및 지도하는 사책을 펴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현재와 같이 감리제도의 시행 및 제도의 강화 방안으로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시책을 변경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겠다고 발주자와 계약한 당사자인 건설회사가 감리자에 우선하여 양질시공에 최선을 다하는, 다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감리제도의 국제화 방안

김예상/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언

정부는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사 품질의 향상과 건설공사체계 선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제도적으로나 실제 업무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정비와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편, 이러한 감리제도 개선 대책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1997년 공공 건설시장 개방과 1996년 감리시장의 조기 개방에 대비한 감리제도의 국제화이다.

감리제도를 국제화한다 함은 해외 건설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사감리 운영체계를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여건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반영, 개선하는 것으로써, 시장개방시 국내공사에 참여하는 외국업체들과의 혼란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시 적응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시공회사 또는 감리회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